

대구지방법원 2021. 3. 26 선고 2020가단127545 판결 [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3. 5.

판결 선고 2021. 3. 26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. 1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3,079,3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079,3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원고가 90%, 피고가 10%를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. 1. 2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31,900,0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1,900,0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원고는 D(피고 B와 자매사이임)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0가소 132948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은 원고에게 "13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. 6. 9.부터 2011. 1. 6.까지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"는 판결(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)을 받았고,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D의 모 E은 2013. 4. 4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 중 1/2 소유지분(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)을 취득하였다.

그리고 2015. 12. 28. 위 E이 사망한 후 2016. 1. 20.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. 12. 28.자 상속재산 협의분할(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이라 한다)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)가 마쳐졌다.

다. 위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. 4. 4. 채권최고액 104,000,000원,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2018. 11. 19.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라. D의 상속지분은 1/6이고, D은 2015. 12.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,3호증 및 을제1,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서증을 언급할 때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D이 위 E의 상속인으로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가 D에게 가진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1)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지분취득 사실을 알고도 1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청구로 부당하다.

2) 소외 H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취득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, 피고가 H에 3,079,34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.

3. 판단

가.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

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,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D이 무자력인 사실, 따라서 D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의 위 채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인정되고,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D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사실은 법률상 추정된다.

그러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분에 대한 D의 상속지분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.

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

1) 가액반환의 타당성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E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고, 이 사건 지분 취득 후에도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C의 상속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그 가액을 반환함이 타당하다.

2) 가액반환의 범위 가) 가액반환의 범위

수익자인 피고의 가액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지분 중 취소되는 C의 상속지분 가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.

나) 반환 가액의 확정

을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0,952,1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E이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그 채권최고액인 104,000,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,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지분(1/2)에 대한 D의 상속지분(1/6) 가액은 3,079,348원 $\{=(140,952,180\text{원} - 104,000,000\text{원}) \times 1/2 \times 1/6$. 원 미만 버림)이 되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한다.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D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3,079,3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3,079,348원의 가액반환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의 가액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, 피고가 위 금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가액반환금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원고도 위 금원의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신종화

별지